### 2023년도 119특수대응단 종합감사 처분요구서

2023. 8.



### 2023년 119특수대응단 종합감사 처분요구

### □ 총괄 현황

<b>2</b> -11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금액)			신분상 조치(인원)			기관			
총계	소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소계	회수	소급	기타	소계	징계	경고	주의	경고
18	16	9	4	3	1	1,291	-	-	1			1	

[단위: 건, 천원, 명]

#### [일련번호 1]

### 인 천 소 방 본 부 권고(개선) 요구

제 목 직속기관 개편에 따른 분장사무 정비

기 관 명 119특수대응단

관계부서 운영지원과, 직할구조대, 119항공대

### [내 용]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은 2022년 5월 2일 시장 직속기관<sup>1)</sup>으로 개편되어 대형·특수 재난대응 등을 수행 중에 있고, 조정된 부서명칭과 조직구성은 [표]]과 같다.

### [표]] 119특수대응단 조직 구성현황



- ▶부서 명칭 변경
- ※ 119특수구조단 → **119특수대응단**(긴급기동대 → **직할구조대**/ 소방항공대 → **119항공대**)
- ▶본부 과 단위 → 시·도지사 직속기관화에 따른 인사·장비 등 지원부서 재편
- ※ 운영지원팀(팀장:소방령) → 운영지원과(행정지원팀, 예산장비팀)

<sup>1)</sup> 직속기관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73조에 따라 소관사무의 성격상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 직속기관으로 설치 가능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30조(소방서 업무)에 따르면 '소방서의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계획 수립' 등 각 소방서장이 관장해야 할 17가지 사무를 규정하고 있고, 소방서 하부조직인 각 괘단)의 분장사무도 「동 조례」시행규칙 제30조(하부조직)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조례」제34조(119특수대응단 업무)에서 119특수대응단장의 관장 사무를 '특수재난 및 대형 재난사고의 구조·구난 활동' 등 4가지로 규정하고 있고, 119특수대응단 하부조직인 각 과(대)의 분장 사무는 「동 조례」시행규칙 제34조(하부조직)에서 규정하고 있다.

119특수대응단은 2022년 5월 2일 직속기관으로 개편 후 1과 2대의 하부조직으로 구성되어 특수재난 및 대형 재난사고의 구조·구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직속기관으로서 각 소방서 분장 사무와 비교하여 아래 [표]의 18개 사무는 추가 분장하여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진다.

[표2] 소방서 분장시무 대비 119특수대응단 누락 사무 검토(안)

행정분야	119재 난대 응분야	현장대응분야
① 중대산업재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진압장비 및 보호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시항 ③ 구조대원 특별교육 훈련에 관한 시항 ④ 구조대원 감염방지에 관한 시항 ⑤ 구조장비 관리에 관한 시항 ⑥ 구조증명서 발급에 관한 시항 ⑦ 구급 업무 운영계획에 관한 시항 ⑧ 구급대원 특별교육 훈련에 관한 시항 ⑨ 구급증명서 발급에 관한 시항 ⑨ 구급증명서 발급에 관한 시항 ⑪ 구급활동 품질관리 항상에 관한 시항 ⑪ 구급대원 의료지도를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시항 ⑫ 구급서비스에 관한 시항 ⑫ 구급서비스에 관한 시항	(b)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에 관한 시항 (li) 재난현장 표준작전철차에 관한 시항 (li) 소병전술훈련 운영 및 평/에 관한 시항 (li) 소방통신망 유지관리에 관한 시항

### 조치할 사항 119특수대응단장은

[권 고] 각 소방서 대비 누락 된 사무에 대해 119특수대응단 내 담당 부서, 인력 및 임무 등 실정을 고려하여 추가 분장할 사무를 검토해주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 [표] 119특수대응단 누락 사무 추가 및 담당부서(안)

담당부서	분장사무
	1.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가. 소방공무원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
	나. 소방공무원 비상근무 계획 수립
	다. 소방공무원 비상근무 실시 지도
운영지원과	2. 재난현장 표준작전철차에 관한 시항
	3. 중대산업재해 안전관리에 관한 시항
	가: 중대산업재해 안전계획 수립
	나. 기타 중대산업재해 안전계획 수립
	4. 소방전술훈련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시항
	5. 구조대원 특별교육 훈련에 관한 시항
	가: 구조대원 특별교육 훈련계획 수립
	나. 특별교육 훈련 결과 보고
	6. 구조대원 감염방지에 관한 시항
	7. 구조장비 관리
	가: 장비 운용 기본계획 수립
	나. 구조 활동 장비, 기자재의 유지관리
-1-1 1	8. 구조증명서 발급에 관한 시항
직할구조대	9. 진압장비 및 보호장비 보강 유지관리에 관한 시항
	가. 진압장비 및 호흡장비 보강
	나. 진압장비 및 보호장비 유지관리
	10. 소방통신망 유지관리
	가. 무선통신 약어관리
	나. 무선국 허가 및 전용회선 관리
	다. 통신장비 유지관리
	라. 통신보안 점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1. 구급 업무 운영계획
	가. 기본계획 수립
	나. 구급 대책 등 기술연구의 개발, 보급
	다. 관계 법령 제정 및 정비
	라. 구급활동 실적분석 및 관리
119항공대	12. 구급대원 특별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110 후 9세	13. 구급증명서 발급에 관한 시항
	14. 구급활동 품질관리 항상에 관한 사항
	15. 구급대원 의료지도를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시항
	16. 구급서비스에 관한 시항
	17. 구급장비관리
	18. 구급대원 감염방지에 관한 시항

<sup>※ 119</sup>특수대응단 제출자료 재구성

#### [일련번호 2]

# 인 천 소 방 본 부 권고(개선) 요구

제 목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 대책 수립 소홀

기 관 명 119특수대응단

관계부서 운영지원과

[내 용]

1. 당직 및 비상 근무에 관한 관계 법령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에 따르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防護員) 또는 그 밖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5조(비상소집 및 비상근무)에 따르면 ① 소방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긴급히 소집(비상소집)하여 일정한 장소에 대기 또는 특수한 근무(비상근무)를 하게 할 수 있고, ② 비상소집과 비상 근무의 종류·절차 및 근무수칙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적용범위)의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제2항에 따라 소방

<sup>2) 「</sup>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행정부 소속 국가행정기관과 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각군(各軍),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의 장은 당직·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 별도로 자체 근무규칙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공무원의 당직3)·비상 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는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을 따라야 한다.

#### 2. 당직의 편성에 관한 관계 법령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당직의 편성) 제3항에 따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1. 당직근무 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기관장이 무인 전자 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有人警備) 실시와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常時) 계속되는 경우
-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 임무를 부여한 경우

나.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9조(당직의 편성) 제3항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상시 근무 체제의 교대제 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적 계속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방기관의 장은 당직 근무자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교대제 근무자 중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 규칙 제9조 제4항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119특수대응단의 당직근무 편성에 관한 판단 기준 및 타 시·도 현황[표2]을 확인한바, 운영지원과에서는 직속기관으로 개편된 이후 근무자 인원, 근무형태, 청사 보안대책 등 해당 기관의 기능 및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을 고려한 「당직 및 비상업무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sup>3)</sup>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2조(정의)

<sup>1. &</sup>quot;당직"이란 휴일,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위한 근무를 말한다.

<sup>4)「</sup>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제9조(당직의 편성) 제4항 각호

<sup>1.</sup>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sup>2.</sup>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sup>3.</sup>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 조치할 사항 119특수대응단장(운영지원과장)은

[권 고] 당직 근무자의 임무5)와 비상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청사 및 인원현황 등 해당 기관의 실정에 맞는 「당직 및 비상업무 대책(직할구조대 포함)」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sup>5)「</sup>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제10조(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sup>1.</sup> 방범、방호、방화 그 밖에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sup>2.</sup> 교대제 근무자와 정규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

<sup>3.</sup> 문서의 수발 · 인계 또는 관리

<sup>4.</sup> 전화민원의 응대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화재, 외부 침입자 발생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유관기관에 연락하고, 소속관서의 장이나 상급관서의 당직근무자 · 당직근무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관서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일련번호 3]

## 인 천 소 방 본 부 시정 요구

제 목 공용차량 운영 및 관리 부적정

기 과 명 119특수대응단

관계부서 운영지원과

### [내 용]

119특수대응단 운영지원과에서는 대형·특수재난사고의 구조·현장지휘 및 지원 등을 위해 재난지휘차 1대를 2012년(소방본부 소속) 정수배정 받았고, 2022년 5월 2일 직속기관으로 개편되면서 지리적 특성 (○구 ○○○○○로 소재)으로 인한 인천시 전 지역 출동에 한계점이 있음을 사유로 신규 재난지휘차 1대를 추가 배정받아, 현재 같은 유형6)의 재난지휘차 2대를 운영 중에 있다.

[표] 공용차량 운영 현황

연 번	차종	유형	차명/차량번호	등록일	내용연수7)	비고
1	특수자동차	재난지휘차	000	2012.04.20	8년	내용연수 경과
2	특수자동차	재난지휘차	0000 (00~0000)	2022.05.03	8년	추가 배정

이와 관련하여,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소방자동차 등의 배치) 제3항에 따르면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 등을 배치하려는 경우 소방기관별로 소방자동차 등에 대한 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소방장비관리법」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내용 연수를 경과한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불용 결정을 할 수 있고,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8조 (소방장비의 처분 및 폐기)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비의 연장사용,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sup>6)「</sup>인천광역시 공용차량 관리규칙」[별표1] 차량 종류의 구분 및 규모·유형 등

<sup>7)「</sup>소방장비관리법」제27조(소방장비의 내용연수)

장비의 조기 불용, 오염의 제거 또는 수리·수선된 장비의 재사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방장비 불용 심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사용이 결정된 소방장비는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1조(배차신청)에 따르면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차량 관리 부서에 신청하여야 하고, 동 규칙 제25조(기록관리)®에 따라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119특수대응단에서 기존 재난지휘차(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를 대체한 신규 재난지휘차 배정이후 기존 재난지휘차를 내부 직원들의 출장 등 행정차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관리전환에 필요한 행정상 조치와 소방자동차 등에 대한 변경 배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또한 차량의 내용연수가경과 하였음에도 소방장비 불용심의회를 운영하여 불용 또는 연장사용을 결정하지 않고, 공용차량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다.

아울러, 재난지휘차 2대(〇〇〇/〇〇〇구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저〇〇〇〇)를 사용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을 하지 않고 운행하였으며,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〇〇〇(〇〇〇구〇〇〇) 차량의 운행일지 작성(날짜, 운행 거리 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119특수대응단장(운영지원과장)은

[시 정] 보유 중인 내용 연수가 경과된 재난지휘차의 「소방장비 불용심의회」를 실시하여 불용 또는 연장 사용 결정에 따른 소방자동차 등에 대한 배치계획을 변경·수립하시기 바라며, 차량배차신청 및 운행일지 작성 등 공용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up>8) 「</sup>인천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25조(기록관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 행정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행정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개서 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차량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sup>1.</sup>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sup>2.</sup>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9호서식)

<sup>3.</sup> 차량유류수불부(별지 제10호서식)

<sup>4.</sup>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1호서식)

<sup>5.</sup> 차량이력카드(별지 제12호서식)

<sup>6.</sup>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 인 천 소 방 본 부 주의 요구

제 목 공무직 근로자(간이 급식소) 복무 관리・감독 부적정

기 관 명 119특수대응단

관계부서 운영지원과장, 119항공대장

### [내 용]

인천시에서는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의 노동조건 및 복무에 관한 기준을 정한 취업규칙으로써 근로자의 처우를 증진하고 노무관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무직및 기간제근로자 복무지침(이하 '복무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복무지침」 제4조(성실의 의무)에 따르면 '근로자는 시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금지사항)에서는 '지시불이행', '이석행위'등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근무상황관리)에는 '근로자는 복무관리시스템 또는 별지 제1호의 근무상황부에 출근 및 퇴근 여부를 등록하거나 서명하여야 하며, 소속부서의 장은 이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 소속 각 기관에서는 공무직 등 근로자가 위의 복무지침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무직 등 근로자 복무점검<sup>\*</sup>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소방본부도 2022년 상반기 취약분야 특정감사의 일환으로 '소방관서 급식소 운영업무 개선방안 마련' 감사를 진행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복무관리 강화방안을 권고 사항으로 각 소방관서에 처분지시<sup>9</sup>) 하였다.

※ 인천시 공무직 등 근로자 복무점검 : '22년 분기별 1회 실시(4회), '23년 상반기 실시(1회)

<sup>9)</sup> 市 소방감사담당관-4230(2022. 5. 3.)호

119특수대응단 119항공대 및 직할구조대에서는 소속 공무직 근로자 복무 관리용 PC를 설치 (지정)하지 않아 공무직 근로자가 출·퇴근 및 초과근무 시 사용하지 않는 직원 PC를 이용하거나 직원에게 부탁하여 e사람 등록을 하고 있었으며, 식자재 구매 시에도 출장 명령을 상신하지 않고 구두로 보고한 후 출장하는 등 복무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119특수대응단장은

[주 의] 공무직 근로자의 복무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출·퇴근, 초과근무, 출장 등의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안전관리법」및「중대재해처벌법」등 관리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식자재 구매 방법에 대해서도 표준 식단제 운용 및 각 대별 인근 마트 지정 또는 급식업체 계약을 통한 배달 주문 등 창의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식자재 구매를 위한 공무직 근로자 출장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체 공무직 근로자 복무점검시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인 천 소 방 본 부 시정(회수) 요구

제 목 외근 직원(당비비) 개인복무시간 산입 부적정

기 관 명 119특수대응단

관 계 부 서 119항공대

### [내 용]

119특수대응단에서는 119항공대에서 운영중인 소방헬기의 항공유를 저장·취급하기 위하여 이동탱크저장소를 운영중에 있다.

[표 1] 119특수대응단 이동탱크저장소 설치 현황

위험물시설 구분 (차 명)	완공일	허가번호 (차량번호)	탱크용량	용도
이동탱크저장소 (○○○이동주유차)	2000.000.000	제OO-0000-00000호 (OO) OOO)	3,000 ℓ	항공유 저장

※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격: 위험물 분야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 또는 위험물 운송 강습교육(소방안전원)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제27조(근무시간) 제1항에 따르면 '소방기관에서 상시근무를 하는 현장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9조(시간외근무 및 보상) 제1항에서는 '소방기관의 장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27조에 따른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방청에서 제정·시행한 「교대제 소방공무원 관리지침」에 따르면 '소방직무 관련 자격·인증시험 응시 등 복무처리 기준'은 연가처리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① 현장 소방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② 소방청·소방학교에서 시험을 주관·실시하거나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두 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시 출장처리 및 근무시간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표 2] 출장·근무 처리 가능 자격·인증시험

주관부처	자격 · 인증
소방청	• 인명구조사, 화재대응능력, 화재조사관, 현장지휘관 자격인증, 화학사고대응능력 소방사다리차운용사
보건복지부	• 응급구조사

※ 소방청 교대제 소방공무원 관리지침 발췌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제3장(근무일과 공휴일) 3.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에 따르면 '재택근무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을 지급할 수 없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로 부서장 등의 긴급 초과근무 명령으로 초과근무를 한 경우실적분 지급 가능'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19특수대응단의 119항공대의 복무사항에 대해 확인한바,

119항공대에서는 위험물 운송자 강습교육 수강계획(재택 온라인 교육, 교육 출장조치)을 수립하여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위험물 운송자 강습교육에 소속 직원 7명을 예산을 사용하여 (사무관리비) 접수하였다. 이 후 개인별 당번 근무를 실시하고 익일 비번날 각자의 자택으로 출장 조치 상신 후 온라인 교육을 받고 수료하였다. 이후 위험물 운송자 온라인 교육을 받은 비번일을 근무상황명령(재태근무), 결과 보고 등 적절한 행정조치 없이 주간 근무(8시간×2일) 처리하였다. 또한, 소방○ ○○은 위험물 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여 이동탱크저장소의 운송이 가능함에도 중복하여 강습교육 받게 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한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119특수대응단장(119항공대장)은

[시 정] 부적정하게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1,291,490원을 회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현장소방공무원 복무규칙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직원 교육 및 지도:감독을 통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대제 소방공무원 관리지침에 따라 야간근무를 포함한 근무(비번활동 포함)를 모두 마친 후 다음 근무에 들어가기 전에는 최소한 24시간 이상 휴식 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행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6]

## 인 천 소 방 본 부 권고(개선) 요구

제 목 공공기록물 보존 관리(문서고) 소홀

기 관 명 119특수대응단

관계부서 운영지원과

### [내 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공공기관)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기록관의 설치)에 의해 '문서고(기록관)'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며, 이에 기록물 및 그와 관련된 시설(이하 문서고)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서고관리) 제①항에서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보존환경의 유지, 보안대책 및 재난대비 계획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기록물을 생산하거나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3조 (편철 및 관리)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업무수행과정이 반영되도록 단위과제의 범위 안에서 1개 이상의 기록물철을 만들어 해당 기록물을 편철하여야 하며, 처리 완결된 일반 문서류는 진행 문서파일에서 분리하여 보존용 표지를 추가로 씌워 편철용 클립 또는 집게로 고정시킨 후 규격에 따른 보존상자에 단위과제별로 넣어 관리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119특수대응단은 '22. 5. 2. 직속기관으로 개편된 이후 문서고를 마련하거나 기록물에 대한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각 부서 사무실 내의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으며 처리가 완결된 일반 문서는 진행 문서와 분리하여 단위과제별로 보존상자에 보관하여야 함에도 문서를 구분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기록물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119특수대응단장(운영지원과장)은

[권 고] 기록물의 안전 및 보안 강화를 위하여 119특수대응단 문서고를 지정 또는 설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각 부서별 완결된 기록물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문서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자체방안을 마련하여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7]

## 인 천 소 방 본 부 주의 요구

제 목 계약 체결업무 부적정

**기 관 명** 119특수대응단

관계부서 운영지원과

###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계약서의 작성)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이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19특수대응단 운영지원과에서는 자체 추진 업무 및 직할구조대·119항공대에서 요청한 공사,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등의 25건의 경비를 지출하면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계약체결 없이 대가를 지급하여 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또한, 이로 인하여 심신안정실 설치 등 3건의 공사계약의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못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정기·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이를 통해 발견될 수 있는 시설물의 결함에 대한 보수 요구를 하지 못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119특수대응단장(운영지원과장)은

[주 의]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또한,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계약을 집행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 및 공사의 도급계약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명확히 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8]

### 인 천 소 방 본 부 주의 요구

제 목 지연배상금 처리업무 부적정

기 관 명 119특수대응단

관계부서 운영지원과

### [내 용]

119특수대응단에서는 119항공대에서 운용하는 소방헬기(〇〇-〇〇〇)의 외주 정비(6개월 검사, 2년 정비) 용역 계약 2건을 체결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지연배상금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및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sup>10)</sup>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18절 "1"에 따르면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고,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sup>10)</sup> 지연배상금률

① 공사: 1000분의 0.5 ② 물품의 제조ㆍ구매: 1000분의 0.8 ③ 물품의 수리ㆍ가공ㆍ대여, 용역: 1000분의 1.3

④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 1000분의 2.5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119특수대응단에서는 소속 소방헬기(〇〇-〇〇〇)의 외주 정비 계약 체결 후 계약업체가 용역 계약에서 정한 납품 기한을 초과하여 이에 따른 지연배상금 부과에 있어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일요일)이므로 준공기한은 익일 월요일에 종료되고 지체 일수는 화요일부터 기산하여 산정하여야 했으나, 공휴일 다음날부터 지체 일수를 산정하여 지연배상금 총 2건, 금 362.330원을 부적정하게 부과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119특수대응단장(운영지원과장)은

[주 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9]

# 인 천 소 방 본 부 시정 요구

제 목 공용물품의 개인 사용 등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119특수대응단

관계부서 운영지원과, 119항공대

### [내 용]

「물품관리법」제26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주의의무)에 따르면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물품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르면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취득금액의 규모가 큰 소모품, 희귀 소모품,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모품 등 주요 소모품은 '소모품대장'에 수불상황 기록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물품 출납공무원이 보관중인 소모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이, 운용부서에 불출하여 관리중인 소모품에 대하여는 사용공무원이 관리하여야 한다.

119특수대응단에서는 예산으로 보호안경(소모품)을 구입하면서 시가 30만원 상당의 고글 (〇〇〇) 총 3점(금897,000원)을 구매하여 소방헬기 조종 업무 담당자 3명에게 개인 지급하였으며, 이 공용물품을 수불 상황 관리없이 개인 배정 물품처럼 사용하는 등 공용물품을 부적정하게 관리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119특수대응단장(운영지원과장)은

[시 정]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용물품(소모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10]

## 인 천 소 방 본 부 시정 요구

제 목 보유 장비 재물조사 및 불용 심의 미실시

기 관 명 119특수대응단

관계부서 운영지원과

### [내 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0조(재물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마다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제59조(정기 재물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른 매 1년 단위의 재물조사를 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물조사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에서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지침을 따라 '2022년 정기재물조사 지침 등 통보 및 안내사항 전달'을 시달<sup>11</sup>)한 바 있다.

또한, 「소방장비관리법」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제1~2항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① 내용연수를 경과한 소방장비 ② 사용할 수 없는 소방장비 ③ 사용할 필요가 없는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불용 결정을 할 수 있고, 상태 및 내용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용 여부 및 적정 교체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up>11)</sup> 市 재산관리담당관-4384(2022. 4. 28.)호

그러나 119특수대응단에서는 2022년 5월 직속기관으로 업무를 개시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내용연수가 경과되거나 물품상태가 노후되어 사용할 수 없는 물품 875점을 불용 결정하지 않고 창고 등에 방치 하는 등 보유 물품 관리업무에 대한 재물조사 및 불용 심의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119특수대응단장(운영지원과장)은

[시 정] 행정안전부 및 인천시 정기재물조사 지침을 준수하여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불용 결정 등을 하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감독과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11]

### 인 천 소 방 본 부 시정 요구

제 목 119특수대응단 소방청사 건물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기 관 명 119특수대응단

관계부서 운영지원과

### [내 용]

「소방시설법」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제1항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소방안전관리의 선임) 제1항에 따르면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에서는 '제5조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9특수대응단 건물에는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설비 등이 설치돼 있고 특히, 소방헬기 격납고에는 포헤드설비가 설치되어있다. 이중 옥내소화전설비와 포 헤드설비의 가압송수장치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이하'엔진펌프'라 한다.)가 축전지 기동 방식으로 설치되어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와 연동하고 있으며 화재시 자동으로 펌프가

기동하여 소화수와 포소화 약제를 옥내소화전설비와 포헤드 설비의 배관 및 헤드까지 충수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감사 기간 119특수대응단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적정 유지관리 여부를 확인한 결과, 엔진펌프의 축전지가 방전되어 소방펌프를 기동시킬 수 없는 상태였으며, 소방펌프 토출측 배관의 누수로 인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을 중지한 상태로 관리하는 등 설치된 소방시설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119특수대응단장(운영지원과장)은

[시 정] 119특수대응단 청사 건물에 설치되어있는 소방시설이 관련 법령 및 국가화재안 전기술에서 정한 성능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고장 수리, 설비의 교체 등의 적의 조치를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감독과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인 천 소 방 본 부 시정(신분상 주의) 요구

제 목 소방헬기 부품 차용(타시도)에 대한 행정절차 부적정

기 관 명 119특수대응단

**관 계 부 서** 119항공대

### [내 용]

119특수대응단 119항공대에서는 2023. 4. 10. ○○○특수대응단장으로부터 소속 소방헬기 (○○○○○)의 착륙장치 충격 흡수장치(Shock Absorber)가 고장나 동일 기종을 운영중인 인천 119항공대의 해당 장비를 차용해 달라는 문서를 접수하였다.

이후 119항공대 해당 업무 담당자는 119항공대장에게 보고(구두)하고 문서 접수 당일 ○○○특수대응단 직원과 차용증 작성 후 해당 장비를 빌려주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제75조(무상대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물품을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무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소관 물품을 대부 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장비관리법」제32조(소방회전익항공기의 운영 협력 등) 제1항에서는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는 소방회전익항공기의 긴급대응체계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제시스템의 공동활용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세부적으로는 동법 「시행령」제35조(소방회전익항공기의 운영협력체제 구축) 제1항 제3호에서는 '소방회전익항공기의 정비인력·시설·장비 및 부품 등 상호지원을 통한 가동률 향상'을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위임위탁규정」제2조(정의)에 따르면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제1항에서는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19특수대응단 119항공대에서는 ○○○특수대응단의 소방헬기 부품차용 협조 요청을 공문서로 기관장의 보고와 승인 등을 득하지 아니하였으며, 119특수대응단 소속 소방헬기의해당 부품의 고장 발생시 즉시 상환 확약과 해당 부품을 차용하여 사용하다 고장이 발생 시 이에대한 보상범위와 방법 그리고 차용후 재 입고시 부품 상태에 대한 보증에 대해서도 협의하지않고 각 기관의 담당자의 차용증만을 작성하고 임의로 공용재산을 차용하여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119특수대응단장(119항공대장)은

[시 정] 타 기관에 차용해 준 소방헬기 착륙장치 충격흡수장치에 대하여 차용 근거, 부품 상태에 대한 보증의 확약 등의 관련 업무를 명확하게 재 추진 하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감독과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 의] 문서보고 및 결재 등으로 권한의 위임과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처리하여 담당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한 아래 관련자를 '주의' 처분합니다.

### (관련자)

119특수대응단 ○○○○대 소방○ ○○○

#### [일련번호 13]

### 인 천 소 방 본 부 주의 요구

제 목 소방헬기 결함에 따른 응원 협정(전파) 부적정

기 관 명 119특수대응단

관계부서 119항공대

### [내 용]

「소방기본법」제11조(소방업무의 응원)에 따르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장비관리법」제32조(소방회전익항공기의 운영 협력 등) 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지역 소방업무 수행에 소방청 또는 다른 시·도의 소방회전익항공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다.

119특수대응단 119항공대에서는 소속 소방헬기(〇〇-〇〇〇)의 외주정비(기체 2년 정비)로 인하여 2023. 2. 20. ~ 4. 16.의 기간동안 출동이 불가하여 인접 유관기관에 헬기 긴급출동 응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외주 정비의 기간이 약 3주 연장되어(입고일 2023. 5. 3.) 해당 기간만큼 임무 수행이 불가함에도 연장된 기간에 대한 별도의 헬기 긴급출동 응원을 요청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119특수대응단장(119항공대장)은

[주 의] 소방헬기의 고장·정비 등 출동이 불가한 경우 119종합상황실, 소방청, 인접 유관기관 등에 응원 요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감독과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인 천 소 방 본 부 시정 요구

제 목 소방드론 취득영상물 운영 등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119특수대응단

관계부서 운영지원과, 직할구조대

### [내 용]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소방청 훈령 제266호) 제3조(관리 및 운용계획의 수립) 제2항에 따르면 '관리 및 운용계획에는 무인비행장치의 전담부서, 운용인력, 도입계획, 예산확보, 교육훈련, 점검 및 유지관리, 안전관리 방안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제15조(항공촬영 등) 제2항에 따르면 '소방무인비행장치 취득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등 개인의 공적·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2023년 소방드론 운용 계획」에 따르면 '소방드론 영상정보 보안관리 강화에 따라 취득한 사진·영상자료는 별도의 보안인증을 거친 저장매체(외장메모리 또는 인터넷 미연결 PC)에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 규정」제19조(교육훈련) 제1항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운용자 등의 조종기술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이론교육(월 2시간 이상) ① 비행이론, 항공관련 법령 ② 기체의 제원 및 성능 ③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실기교육(월 4시간 이상) ① 기체 적응비행 및 수직 이·착륙, 비상시 조치요령 ② 공중조작 및 지표부근에서의 조작 ③ 기체점검 및정비 요령 등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4항에 따라 실기교육은 현장활동12)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sup>12)</sup>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11조(현장활동) 화재, 재난 등 긴급구조활동, 재난상황 정보수집, 화재조사 지원활동 등

그러나 119특수대응단 직할구조대에서는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소방드론을 활용하여 취득한 영상에 대하여 보안 인증을 거치지 않은 드론 담당자의 PC에 보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22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월중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기교육만 실시하고 이론교육을 누락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119특수대응단장은

[주 의] ① 소방드론을 통해 취득한 사진·영상자료 중 개인위치정보 등 개인의 공적· 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영상 자료를 보관 및 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방드론 촬영으로 개인의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로 발생 가능한 민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담당직원의 지속적인 업무연찬 및 직무 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소방드론 운용자의 조종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담당직원의 교육훈련(이론교육 월 2시간이상, 실기교육 월 4시간이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15]

### 인 천 소 방 본 부 시정 요구

제 목 호흡보호장비 공기충전기 등 유지・관리 소홀

기 관 명 119특수대응단

관계부서 운영지원과

### [내 용]

「소방장비관리법」제33조(소방장비의 점검 등) 제1항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소관소방장비를 점검하고 그 점검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제36조(소방장비의 점검 등)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방장비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한 주기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소방청 훈령 제330호) 제15조(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제6항에서는 '소방기관의 장은 호흡보호장비를 [별표7]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 야 하고,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소방청 훈령 제330호) [별표7]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5.(공기 품질 검사) 가목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은 공기충전기에서 제조된 호흡용 공기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기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8.(정기검사 등) 바목 잠수장비(부력조절기, 용기, 호흡조절기 등 구성품을 포함)는 매 3년마다 1회 이상 제조사 또는 외부 전문업체에 정밀점검을 의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19특수대응단 직할구조대에서 운영하는 공기충전기를 2022년 상반기에 전문기관에 공기 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직할구조대 및 119항공대에서 보유 중인 잠수장비 (부력조절기, 용기, 호흡조절기 등) 15세트 중 부력조절기(13개) 및 호흡기(1개)를 제조사 또는 외부 전문업체에 최근 3년 이내에 정밀점검을 받지 않는 등 관련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119특수대응단장(운영지원과장, 직할구조대장)은

[시 정] 정밀점검을 받지 않은 잠수장비인 호흡기(1개)는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불용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하시고 부력조절기(13개)는 제조사 및 외부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정밀점검을 받기 바라며, 동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 교육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16]

# 인 천 소 방 본 부 시정 요구

제 목 위험물 제조소 등 안전관리 소홀

**기 관 명** 119특수대응단

과 계 부 서 운영지원과, 119항공대

[내 용]

### 1.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 소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제1항에 따르면 '제조소등의 설치자(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망하거나 그 제조소등을 양도 · 인도한 때 또는 법인인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제조소등을 양수 · 인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제3항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 ·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히고 있다.

그러나 119특수대응단에서는 설치허가 된 제조소등의 지위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22. 5. 2. 직속기관) 옥내탱크저장소와 이동탱크저장소는 기간을 초과하여 신고하였으며 항공기주유취급소는 종합감사 수감기간 현재까지도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않는 등 위험물제조소등 지위승계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2. 이동탱크저장소 정기점검 부적정

「동법」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sup>13)</sup>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sup>13)「</sup>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 등)

<sup>1.</sup> 시행령 제15조 각호의 해당하는 제조소등

<sup>2.</sup> 지하탱크저장소,

<sup>3.</sup> 이동탱크저장소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시행규칙」제64조(정기점검의 횟수), 제67조(정기점검의 실시자) 제1항에 따르면 '제조소등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을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이동탱크 저장소의 경우에 한한다)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119특수대응단에서는 설치허가 된 이동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면서 이동탱크의 운송자가 실시하지 않고 운영지원과의 직원이 형식적인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험물 취급의 안전관리와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3. 제조소등 위치 · 구조 및 설비 기준 관리 소홀

「동법 시행규칙」[별표7] 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따르면 'I. 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 1. 다. 보기 쉬운 곳에 "옥내탱크저장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는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바탕은 백색, 문자는 흑색으로 하여야하며, 보기 쉬운 곳에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품명 및 저장최대수량 또는 취급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및 안전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을 기재하고 바탕은 백색, 문자는 흑색으로 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 기준」'I. 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 1. 아. 옥내저장탱크에는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동탱크저장소는 「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제3조 (위험성 경고표지) 제1항에 따라 '위험물 수송차량의 외부에 위험물 표지, UN번호 및 그림문자를 표시하여야 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0] 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V. 표지 및 상치장소 표시에 따라 상치장소의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up>4.</sup>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그러나 119특수대응단에서는 "옥내탱크저장소" [표지]가 아닌 "일반취급소"로 표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저장최대수량 또는 취급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가 기재되지 않은 [게시판]을 규정에 맞지 않게 관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옥내탱크저장소의 잔량계의 고장으로 위험물 양을 측정할 수 없어 자체적으로 제작한 측정계를 사용하여 위험물 양을 측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 측정 시 마다 위험물의 측정량이 상이하여 자량 파악 등 유류 반입·반출 시 수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또한, 이동탱크저장소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이 2016.01.22. 제정<sup>14)</sup>됨에 따라 '종전에 설치한 이동탱크저장소는 2016.12.31.까지 소급하여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119특수대응단의 이동탱크저장소는 ① UN번호, ② 그림문자, ③ 상치장소의 위치를 외부에 표시하지 않고 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119특수대응단장은

[시 정] ① 항공기주유취급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주시고,

- ② 이동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은 앞으로 동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물 운송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업무연찬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③ 경고표시 등 옥내탱크저장소 및 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설비 기준이 적합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처분 전말처리 전까지 현재 옥내탱크저장소에서 사용중인 자체 제작한 측정계는 줄자의 끝부분이 금속으로 되어있어 스파크 등으로 부유 중인 유증기와 접촉 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용을 금하고 화재 위험성이 낮은 대체품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sup>14) 「</sup>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 및 고시 제·개정 알림 - 국민안전처 방호조사과(509, 2016.01.20.)